

반복된 물류센터 사망사고, 이젠 진짜 책임져라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고발 기자회견

2018년 11월 5일(월) 오전 9시 30분
대한통운 본사(서소문동 사옥)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전수경 / 노동건강연대

1. 사건개요와 고발취지
 - 노동건강연대 안현경 회원(노무법인 참터 노무사)
2. 현장발언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장 (박성기)
3. 연대 발언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알바노조 (신정웅 비대위원장)
 - 정의당 청년본부(정혜연 부대표)
 - 노동당 (나도원 비대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5. 퍼포먼스
6. 면담요청 및 항의방문

〈보도자료 순서〉

1.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노동자 연쇄 사망 현황 - 2p
 2. CJ대한통운 주요 산재사망 및 산재현황 - 3p
 3. 물류센터 주요 산재사망 현황 - 6p
 4.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고발장 - 7p
 5. 기자회견문
‘계속되는 CJ대한통운 물류센터 하청노동자 연쇄사망
- CJ대한통운과 박근태 사장을 처벌하라’ - 10p
- 문의 : 정우준(010-9674-1247), 신정웅(010-9869-0114)
정혜연(010-8449-6635), 박연수 (010.3092.1748)

노동건강연대 / 알바노조 / 정의당 청년본부 / 노동당 / 변혁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공공운수노조 / 화물연대 택배지부

1.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노동자 3명 연쇄사망 경과

▶ 2018년 8월 6일

- 대학교 2학년 김모(23)씨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업무 이후 마무리 작업을 하며 주변을 정리하던 중 감전 사고
- 사고 당시 김씨는 전역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복학을 앞두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것이 죄송해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
- 이후 취재 등을 통해 같은 작업장에서 손가락 절단과 복숭아뼈 골절 등의 사고가 있었지만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산재처리를 요구하면 블랙을 당한다는 증언이 나옴
- 포도당 2알과 얼음물 한 병에 의존해 12시간 이상 노동

▶ 8월 7일

- 관리자가 물류센터 노동자 20-30명을 모아놓고 조회시간에 사고은폐를 종용하고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강요

▶ 8월 16일

-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김씨가 오전 12시경 사망

▶ 사고 이후

-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이 특별감독을 통해 안전상 조치 의무 위반 등 수십 건의 안전 관련 위반사항 적발[과태료 26건, 사법처리 26건, 사법처리 26건, 시정지시 3건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사항을 적발]

▶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와 하청업체는 총 7500여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었으나 전체 과태료 중 CJ대한통운에 부과 된 65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6800여만 원은 하청업체에게 부과됨

▶ 8월 27일

- 고용노동부 CJ대한통운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한진, 롯데 택배 및 하청업체까지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진행하기로 함.

▶ 8월 28일

- 노동건강연대, 알바노조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및 대표이사 3인 검찰 고발

▶ 8월 30일

- CJ대한통운 옥천터미널에서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던 하청 노동자 A씨(54세)가 쓰러진 후 사망

▶ 10월 29일

- 오후 10시 CJ대한통운 대전터미널에서 C씨(33)가 택배 짐 싣기 작업 후 컨테이너 문을 닫다

후진하던 트레일러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

▶ 10월 30일

- C씨 오후 6시 20분 사망

2. CJ대한통운 주요 산재사망 및 산재현황

- 최근 3개월간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노동자 3명 연쇄사망
- 대전물류센터 8월 노동자 감전사 이후 CJ대한통운 고작 650만원 과태료 처분. 또 다시 노동자 사망
- CJ대한통운에서 2015-17년 사이 알려진 산재 사망자 4명, 부상자 20명.
- 2015-17년 사이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만 공식적으로 11명

(1) 1차 CJ대한통운 물류센터 연쇄사망

- 대전물류센터 청년하청노동자 감전사 사고개요

사망자	사업장	사고일	경위	사망 원인	비고
A(23)	대전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	2018.08.06	새벽일을 마친 뒤 마무리 작업을 하며 컨베이어벨트 아래를 청소하던 중 기동에 감전됨.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열흘 뒤 사망	감전	

- 당시 노동부는 1주일간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CJ대한통운 대전지역 책임자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하지만 하청업체와 CJ대한통운에 각각 6천800여만원·65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것에 그쳤다.
- 노동건강연대와 알바노조는 8월 28일 과태료 650만원으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원청 CJ대한통운의 사고 책임을 묻기 위해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외 대표이사 3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 CJ대한통운 옥천물류센터 하청노동자 사고개요

사망자	사업장	사고일	경위	사망 원인	비고
B(53)	충북 옥천군 물류센터	2018.08.31	30일 오후 10시 20분 경 53세 하청 노동자 B씨가 택배차량 안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	원인 미상	

- CJ대한통운 옥천물류센터에서 상하차업무를 하던 53세 B씨는 임시직으로 일을 시작한지 3

일 만에 사망했다. 대전 물류센터에서 상하차를 하던 노동자가 사망한지 채 한 달이 안 된 상황이었지만 CJ대한통운은 해당 노동자의 개인병력에 의한 사망으로 사고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 CJ대한통운 대전터미널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개요

사망자	사업장	사고일	경위	사망 원인	비고
C(33)	대전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	2018.10.29	택배 짐 싣기 작업 후 컨테이너 문을 닫다 후진하던 트레일러에 끼여 사망	협착	(1)과 같은 사업장 / 같은 파견업체

- 대전물류센터는 지난 8월 감전사 사망사고 이외에도 노동자의 손가락이 레일에 끼어서 잘리고, 발이 끼 복숭아뼈가 으스러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사업장이었다. 이는 감전사 이후 진행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밝혀졌지만 시정되지 않았고 또 다시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 2015-2017년 3년간 CJ대한통운 물류센터 산재사망 현황[4명]

사망자	원청 사업장	하청 사업장	사고일	사망원인
A	씨제이대한통운 광양컨테이너운영	남양항운(주) 컨테이너지점	2015.01.28	협착
B	서울양천터미널		2016.06.03	뇌출혈
C	전북군산터미널		2016.08.06	원인미상
D	서울강남터미널		2017.10.07	심근경색

(출처 : 노동부 중대재해 자료 및 신문기사, 노동건강연대 재가공)

(3) 2015-2017년 11월까지 3년간 CJ대한통운 산재 현황[20명]

사업장명	현장명	산재발생일	산재승인일	질병종류
씨제이대한통운(주) 광주지사		2015년 5월 10일	2015년 7월 28일	인체부담작업
씨제이대한통운(주) 평택지사		2015년 5월 26일	2015년 10월 27일	비사고성·작업관련성요통
CJ대한통운 신연체대리점		2015년 7월 6일	2015년 9월 9일	사고성요통
대한통운(주) 화순출장소		2015년 7월 20일	2016년 4월 28일	진폐
로이선급합의아아(영업소)	CJ대한통운	2015년 7월 29일	2016년 2월 15일	작업관련성 질병 기타
대한통운(주) 이양출장소		2015년 8월 11일	2017년 2월 2일	진폐
씨제이대한통운(주) 광주지사		2015년 8월 31일	2016년 3월 3일	인체부담작업
대한통운(주) 태백영업소		2015년 11월 3일	2016년 12월 28일	진폐

대한통운(주) 고한출장소		2016년 1월 14일	2016년 5월 4일	진폐
씨제이대한통운(주) 택배서울중앙	대한통운(주)택 배서울지사 가산지점	2016년 4월 8일	2017년 9월 21일	심장질환
대한통운(주) 화순출장소		2016년 4월 11일	2017년 5월 11일	진폐
씨제이대한통운(주) 울산지사		2016년 5월 13일	2016년 7월 25일	사고성요통
씨제이대한통운(주) 택배서울중앙	씨제이대한통운(주)택배) 영등포지점 (양천터미널)	2016년 6월 4일	2016년 12월 6일	뇌혈관질환
대한통운(주) 동리출장소		2016년 7월 29일	2017년 5월 15일	진폐
하이스트물류	CJ대한통운	2016년 8월 5일	2016년 10월 26일	인체부담작업
씨제이대한통운(주) 울산지사		2016년 9월 20일	2016년 12월 22일	사고성요통
(주)세원유앤씨 -분류업	대한통운부산 암웨이지점	2016년 9월 26일	2016년 10월 24일	사고성요통
태양물류 (문평동대한통운)		2016년 11월 24일	2017년 3월 27일	비사고성· 작업관련성요통
씨제이대한통운(주) 진해영업소		2016년 11월 28일	2017년 2월 10일	인체부담작업
케이비씨아이	대한통운 영등포	2017년 4월 3일	2017년 5월 4일	사고성요통

(출처 : 노동부 업무상 질병 사망 및 질병재해현황, 노동건강연대 재가공)

3. 2015-2017년 3년간 물류센터 산재사망 현황

● 3년간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만 공식적으로 11명

원청명	사망(명)	산재발생일	발생형태
제일모직고촌물류센터-(주)에스텍시스템	1	2015-05-25	화재
에스오케이물류(주)	1	2015-09-14	협착
경동택배 김포지점/합진운송하역(주)	1	2015-11-12	추락·협착
한국거성화물(주)	1	2015-01-30	충돌
대운특수화물	1	2015-04-13	추락
한국로지스폴(주)	1	2015-02-23	충돌
씨제이대한통운(주)광양컨테이너운영	1	2015-01-28	협착
(주)동서식품 제2공장	1	2016-02-29	협착
제이디물류	1	2016-12-30	전도
힐중공업(주)	1	2017-06-19	부딪침(충돌)
한국통운(주)	1	2017-01-10	감김,끼임(협착)

(출처 : 노동부 중대재해자료, 노동건강연대 재가공)

고 발 장

고발인

1. 노동건강연대

대표 이상윤

2.

회원 안현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상상청(9동) 303호

전화 02)469-3976

3.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대표 신정웅

서울 은평구 연서로18길 3 라브리타워 701호

전화 02)3667-0936

4. 정의당 청년이당당한나라본부 부대표 정혜연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7 동아빌딩 5층

전화 02)2038-0103

5.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택배지부 지부장 박성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39-4 철노회관

전화 02)2635-0789

피고발인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근태, 손관수, 김춘학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53(서소문동)

고 발 취 지

2018. 10. 29.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대전물류센터에서 일하던 협력업체직원이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 여부를 가려내어, 그 위법 사실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당사자

고발인1,2는 노동자 산재예방·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와 회원이며, 고발인3은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이며, 고발인4는 대한민국 정당의 부대표이며, 고발인5는 CJ대한통운에서 일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 노동조합 대표입니다. 피고발인들은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2. 사건의 개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8. 10. 29.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대전물류센터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18. 8월에도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던 노동자가 감전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였고, 2달간의 부분 작업중지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 작업중지명령 조치가 끝난 뒤, 또다시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한편, 과거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안전교육 미실시, 근로자가 끼었을 때 바로 작동을 멈추도록 하는 비상정지장치 미설치(일부), 협착 위험이 있는 공에 덮개 미설치,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난간 등의 미설치 등’ 수 십 건의 안전위반사항이 발견되었고, 위 감전사고 이외에도 ‘노동자의 손가락이 레일에 끼어서 잘렸던 사고, 레일 틈으로 노동자의 발이 끼여 복숭아 뼈가 으스러지는 사고’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 8월 피고발인의 사업장 중 옥천물류센터에서도 일용직 노동자가 상·하차작업을 하던 도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고발인의 사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 4대보험 미가입,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및 재해예방조치 미흡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사실도 있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 위반 혐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법상 요건에 해당되는 도급 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31조는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은 상기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도를 철저히 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의 사업장에서는 최근 3개월간 3건의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 실시 결과 실제 수 십 건의 안전위반사항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발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조 등에서 정한 제반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결론

이에,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 여부를 가려내어, 그 위법 사실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5.

고발인	노동건강연대	대표	이 상 윤 (인)
		회원	안 현 경 (인)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대표	신 정 웅 (인)
	정의당 청년이당당한나라본부	부대표	정 혜 연 (인)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택배지부	지부장	박 성 기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계속되는 CJ대한통운 물류센터 하청노동자 연쇄사망 - CJ대한통운과 박근태 사장을 처벌하라

노동건강연대와 알바노조, 정의당 청년본부 그리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는 오늘 CJ대한통운 본사 앞에 CJ대한통운 사장 박근태와 대표이사인 손관수, 김춘학을 고발하기 위해 8월에 이어 또 다시 나섰다. 지난 8월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에서 감전사한 알바노동자 김 군에 대한 책임이 CJ대한통운에게 있으며, 그 책임은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이 마땅히 져야 한다고 대표이사들을 고발했지만 변한 것은 없었다. 또 다시 CJ대한통운에서 노동자가 죽었다. 3개월 간 3명의 노동자가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죽었다.

다시금 발생한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은 노동자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 대기업이 얼마나 후진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며 노동자가 죽은 뒤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노동자가 계속해서 사망함에도 대기업은 하청노동자·알바·비정규직에게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고, 알바노동자의 안전관리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음은 계속되는 노동자의 죽음으로 증명됐다. 가장 큰 이윤을 얻지만 이윤을 위해 모든 ‘을’을 희생시키는 대기업의 파렴치한 행위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반복되는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은 엄연한 대기업의 ‘범죄행위’이다. 사고는 ‘안전불감’이라는 행위자가 모호한 말로 설명할 수 없다. CJ대한통운은 업계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부문별한 경쟁과 이 과정에서 철저히 노동자를 쥐어짜내고 있다. 택배업계 점유율1위(약 50%)라는 타이틀은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경영전략의 결과이며 대기업의 범죄행위이다. 이 범죄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CJ대한통운 ‘경영행위’의 결정자인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져야 한다.

사고의 책임이 CJ대한통운에게 있기에 하청,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구분하지 말고 임금을 지급해라. 또한 이 사고 조사와 작업중지 해제에 당사자인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CJ대한통운에서 20대, 30대, 50대 연령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가 계속해서 사망하고 있다. 감전사, 교통사고, 과로사라는 원인만 다를 뿐 CJ대한통운이 막대한 이윤을 얻게 되는 ‘경영행위’로 인해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다단계 하청 구조 뒤에 숨어 노동자들의 사망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CJ대한통운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 CJ사고의 개연성이나 가능

성을 알면서도, 또 같은 사업장에서 이미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기업의 이윤을 위해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 타당한가? 정부와 검찰, 법원은 답을 알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알바노동자 감전사 이후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으로 수많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찾아냈지만 CJ대한통운이 받은 과태료는 고작 650만원에 불과했다. 노동자가 사망해도 650만원이면 된다는 생각이 또 다시 한 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대기업을 비롯해 사용자들은 더 많은 이윤과 탐욕을 위해 간접고용, 하청, 외주화, 도급과 같은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산업재해를 비롯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 은폐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고, 이들의 노동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리는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이 사회정의다. 우리는 고작 650만원의 정의만을 원청업체 CJ대한통운에게 요구함으로써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리는 자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영국, 호주, 캐나다는 산재사망 일으킨 기업주를 '기업살인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검찰과 정부, 법원이 의지를 갖는다면 가능하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 요소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주를 범죄자로 규정하여 처벌한다면 많은 노동자들이 죽지 않을 수 있다.

또 다시 사망한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는 이미 알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주를 처벌하는 '기업살인법'이 故노회찬 의원의 대표발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명칭의 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스스로 촛불 혁명을 통해 탄생한 촛불 정부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노동행정을 책임지는 노동부는 임기 내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부가 스스로가 공약한 약속을 지키는지 주시할 것이다.

2018 11월 5일

노동건강연대 / 알바노조 / 정의당 청년본부 / 노동당/ 변혁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공공운수노조 / 화물연대 택배지부